

제주지방우정청 공고 제2023-36호

「우편법 시행규칙」 제61조제6항에 따른 「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, 취급우체국,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(제주지방우정청 고시 제2023-2호)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6월 21일

제주지방우정청장

「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, 취급우체국,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」 개정(안) 행정예고

1. 개정이유

제주↔추자도 간 우편물을 운송하는 선박(송림블루오션호,10:30출항) 운항 종료('23.7.17.자) 및 대체 운송 선박(산타모니카호) 변경으로 조기 출항(09:10)함에 따라, 추자도우체국 익일특급 우편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익일특급 우편물 취급시간을 조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: 추자도우체국 익일특급 우편물 취급시간 조정(붙임)

3. 시행일: 2023. 7. 13.(목)

4. 의견 제출

「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, 취급우체국,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」 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, 2023년 7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지방우정청 우정사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법인·단체 등의 경우 법인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제출하는 곳: 제주지방우정청 우정사업과

○ 주 소: 제주시 청사로 59,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2층

제주지방우정청 우정사업과

○ 전 화: 064-800-5926(Fax: 0505-005-2292)

○ E-mail: kos0702@korea.kr

라.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정사업본부 (제주지방우정청)홈페이지(<http://www.koreapost.go.kr> 열린경영/공고/일반공고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「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, 취급우체국,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」 개정(안)

제주지방우정청 고시 제2023- 호

「우편법 시행규칙」 제61조제6항에 따른 「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, 취급우체국,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(제주지방우정청 고시 제2023-2호)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.

2023년 6월 21일

제주지방우정청장

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, 취급우체국,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

< 익일특급 우편물 취급시간 변경내역 >

지역명	접 수 우체국명	익일특급(변경 전)		익일특급(변경 후)	
		제주	기타지역	제주	기타지역
제주시	추자도	09:00	09:00	08:30	08:30